

2023. 7. 10. 보도 자료

공보관실 02)708-3411 / 팩스 02)766-7757



제 목 : 7월 변론 안내

- 헌법재판소는 오는 7. 13.(목) 14:00 대심판정에서 아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번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인 (대리인)	피청구인 (대리인)	비고
1	2023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정점식 외 5 (법무법인 소백)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범균 외 4) / 국회의장 (법무법인(유한) 원)	

붙임 : 관련사건 보도자료 1부. 끝

보도자료

방송법 등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23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공개 변론]

헌법재판소는 2023년 7월 13일 대심판정에서 2023. 4. 14. 접수된 2023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1) 피청구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3. 3. 21. 개최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각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가결되자 피청구인 국회의장에게 위 각 법률안들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 및 (2)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3. 4. 27. 개최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위 각 법률안에 대한 각 본회의 부의의 건' 을 안건으로 상정한 후 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를 대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청구인들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이다.



2023. 7. 10.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위원들이다.
- 피청구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방위’, 그 위원장은 ‘과방위 위원장’이라 한다)은 2022. 12. 2. 제400회 국회(정기회) 과방위 제12차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이 사건 각 법률안’이라 한다)에 대해 가결을 선포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법률안은 국회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되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2023. 1. 16. 제402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 각 법률안을 심사한 후 이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고,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023. 2. 22. 제403회 국회(임시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해 계속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법사위에서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 중이던 2023. 3. 21.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이유로 국회법 제8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각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제404회 국회(임시회) 과방위 제1차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였다. 과방위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여 위 안건이 가결되자,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은 같은 날 피청구인 국회의장에게 이 사건 각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였다.
- 이에 청구인들은 2023. 4. 14.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이 2023. 3. 21. 제404회 국회(임시회) 과방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각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해서 가결을 선포한 행위(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이 이 안건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한 후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한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여,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라 한다) 및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장차 개의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각 본회의 부의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할 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그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2023헌라2), ㉠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효력정지를 구하고, ㉡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각 본회의 부의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의 금지를 구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다(2023헌사386).

- 한편,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 이후인 2023. 4. 27.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제8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각 본회의 부의의 건’을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한 후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고, 2023. 4. 28. 이 사건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다(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이 안건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한 후 이 사건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한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여, ‘이 사건 본회의 부의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3. 6. 5.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청구취지를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3. 4. 27.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각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관련조항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국회법(2021. 9. 14. 법률 제18453호로 개정된 것)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난 모든 법률안이 아니라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에 한하여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이유 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법사위는 2023. 1. 16.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 각 법률안을 심사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이를 회부 하였으며, 2023. 2. 22.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 각 법률안의 법 체계 등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인 2023. 4. 19.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였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법사위의 심사가 지연된 것에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며, 이를 전제로 한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행위 역시 국회법 및 헌법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주장 요지

-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법률안에 대해 직접 본회의

부의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회부된 날부터 60일 경과’와 ‘이유 없이’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① 청구인들은 법사위 전체회의 및 제2소위 회의를 열어 필요한 심의를 계속하고 있었고, ② 법사위 제2소위 회의에 참석한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 ‘충분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부탁하는 등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③ 이 사건 각 법률안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는 헌법 위반의 문제로서 법률안에 대한 체계심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체계·자구 심사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심사를 계속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 따라서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바, 청구인들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주장 요지

- 국회법 제86조 제4항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국회법상 절차 요건을 갖추어 부의 요구를 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본회의 부의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피청구인 국회의장에게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나,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에 관한 표결 실시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된 본회의에서 ‘이 사건 각 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가결되자, 2023. 4. 28. 이 사건 본회의 부의행위를 한 것은 국회법 제86조 제4항을 따른 것으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